

2023년도

학생문라편 꼭 알아야 할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Chungbuk-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어떻게 궁금하세요?



01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01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02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안내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나요?

0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제도 안내

상담·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가요?

04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신청하세요

? 학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

?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활동이 해당됩니다.

- ▶ 특별·재량·과외·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등
- ▶ 수업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 보상 가능한 질병은?

-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 일사병(日射病)
- ▶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입원치료 중 간병료 청구 가능

장해급여

요양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청구

간병급여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청구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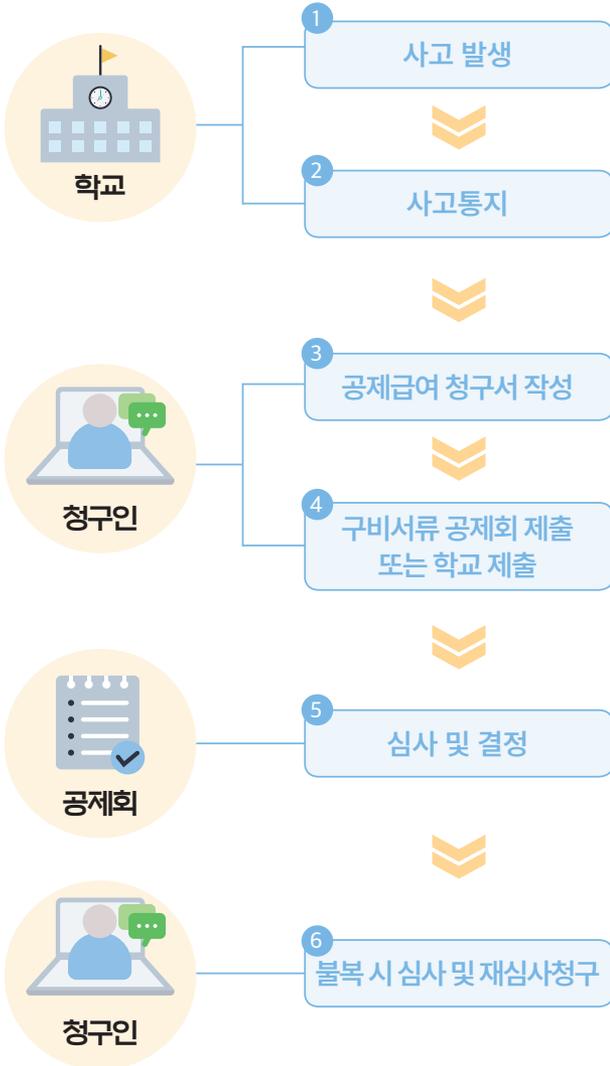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 청구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청구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청구하세요



? 누가?

학부모(보호자 등) 또는 학교

? 언제?

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한 이후 치료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 가능

※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음(중간청구 가능)

?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 자세한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22p)를 참고해주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05



구비서류

- 1 공제급여청구서
- 2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4 진료비 세부내역서
- 5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6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병료와 부대경비 청구 시 구비서류는 11p를 참고해주세요.

서류제출 방법

- 1 우편발송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2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이런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06



지급범위

요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 간병료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간병 부대경비 : 1일당 2만원 	「학교안전법 제36조」
장해급여	일실수익+위자료	「학교안전법 제37조」
간병급여	상시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수시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	「학교안전법 제38조」
유족급여	일실수익+위자료	「학교안전법 제39조」
장례비	평균임금의 100일분	「학교안전법 제40조」
위로금	4천만원	「학교안전법 제40조의2」

지급기한

- ▶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보완할 서류가 없는 경우)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합니다.
-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시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기준 안내

- 1 사고 발생
- 2 사고 통지 학교
- 3 청구서작성 학부모/학교
- 4 서류제출 학부모/학교
- 5 심사 및 결정 공제회

[]외래 []입원 (([]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여건(공통일)진료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부대 [] 야간 [] 공휴일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상징내용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진료료			① 환자부담 총액 (①-②)+③+④+⑤
입원료			② 입부할 금액 (⑥-⑦)
의사료			③ 기타 납부할 금액
방학 및 조제료			④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카드
기 분 항 목			⑤ 납부 한 금액
약재료			환급영수증
치과 및 수술료			현금
장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환급영수증()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환급영수증 승인번호
정신과치료료			*속장기관 의뢰환공급권

급여	비급여
전액보상 * 상급병실료(1~3인실)제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일부보상

※ 급여항목이더라도 부상과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 불가

▶ 비급여 항목 중 대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상급병실료, 도수·신장분사·체외충격파치료 및 이와 유사한 치료, 조직재생·강화 주사 및 부상과 무관한 영양제 주사 등

보상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땐?

청구절차



청구기한

보상심사
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상재심사
심사청구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새롭게 추가된 제도가 궁금해요!

09

1 영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중에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법 제36조」개정 (' 22.3. 시행)

지급대상

-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영양 중에 간병을 받으며, 부상·질병 상태가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할 경우
 -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 피공제자의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자

[주의]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간병인정기간 및 대상은 심사에 의해 결정됨

구비서류

제출서류

- 영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이용안내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병인 신분증
-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 (전문 간병인 활용 시) 간병료 지급 영수증, 전문 간병인 증명서
- (가족 간병인 활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도가 궁금해요!

10

2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입·통원이 예상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지원내용

교육 콘텐츠 지원	EBS 온라인 교육 콘텐츠(중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
학습 기자재 지원	테블릿 PC

신청방법 (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문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학교안전 콜센터(☎1688-4900)

Q&A

? 안경파손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안경 수리·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이 분실·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 중 발생한 분실·파손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하는 휴대폰의 범위는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학교안전 콜센터(☎1688-4900)

?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계속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기간이 연장되어서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 횟수 제한이 없이 3년 이내로 연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졸업·전학을 한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간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02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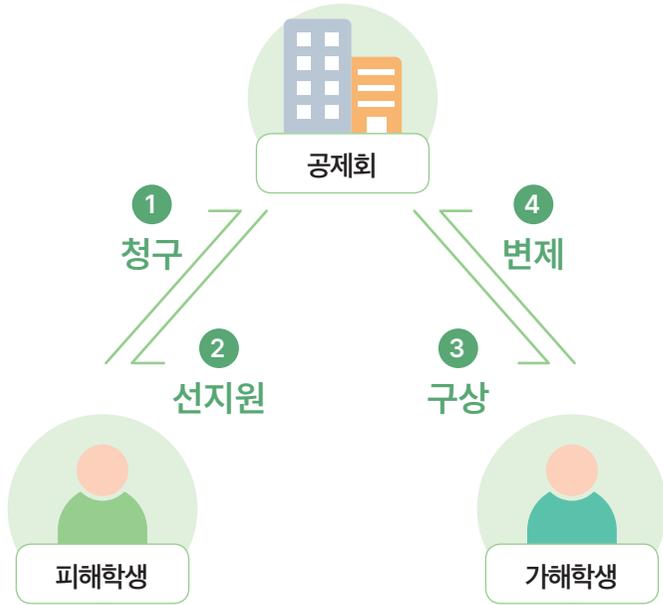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추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01

처리절차



청구절차

- 1단계** 학교폭력 사고통지(학교)
- 2단계**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서 작성(학부모 또는 학교)
- 3단계** 구비서류 제출(학부모 또는 학교)

이렇게 청구하세요

02

- 1 학폭 발생
- 2 학폭위 개최
교육지원청
- 3 사고통지
학교
- 4 **청구서작성**
학부모/학교
- 5 서류제출
학부모/학교
- 6 심사 및 결정
공제회

? 누가?

학부모 또는 학교

? 언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실패 시

?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 자세한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22p)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범위

보상범위	세부내역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또는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03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 청구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급여별 제출서류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기관의 계산영수증 및 상담내역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진료비계산서 및 세부산정내역서 등
	일시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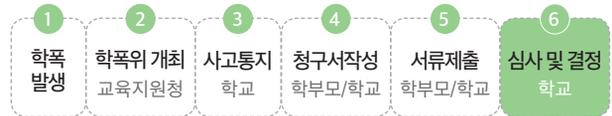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방법

- 1 우편발송**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2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은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처리과정을 알려드려요

04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울때?

-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재심사 기회가 있습니다.

※ 재심사제도가 궁금하다면 재심사제도 안내(10p)를 참고해주세요.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 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지원 내용과 추후 구상권을 행사함을 안내합니다.
- ▶ 아울러, 구상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구상합니다.

0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제도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01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심리치료 지원 순서



심의기구

국립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국립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제외한
일체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관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 필수서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기간

1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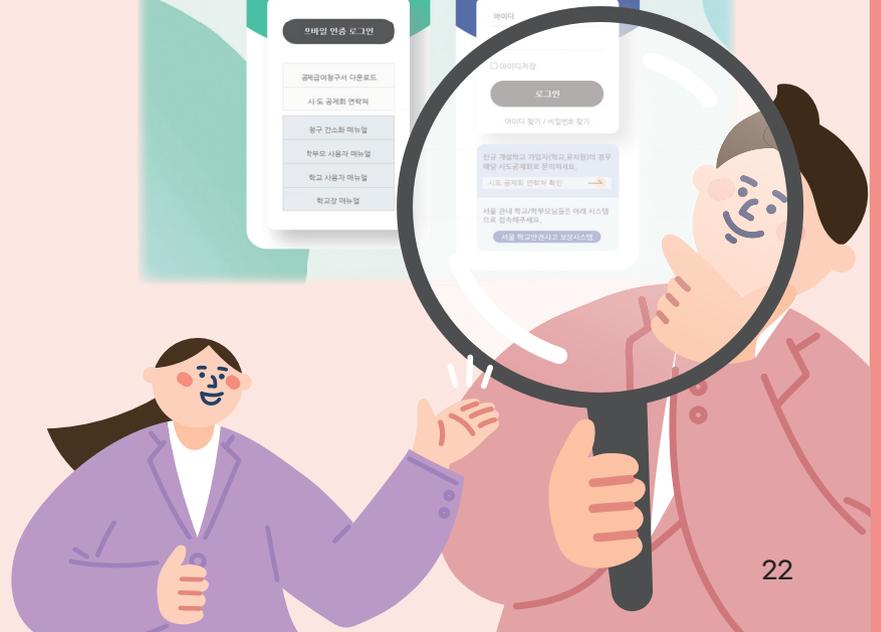
지정된 치료기관에서의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교육청)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치료기관

※ 치료 지정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주세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1 접속 및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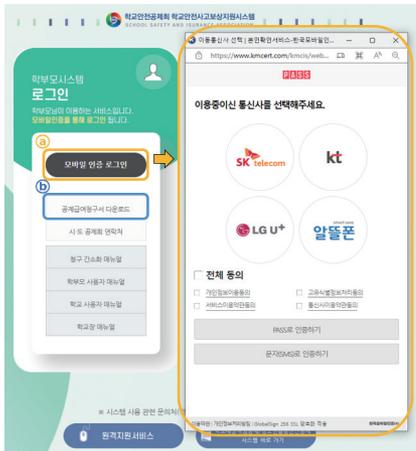
? 어떻게 접속하나요?

www.schoolsafe.or.kr 에 접속하세요.



접속 QR코드

?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요!
모바일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세요”

학부모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a 모바일 인증 로그인 후
시스템으로 접속됩니다.

※ 작동이 안 될 때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688-4900)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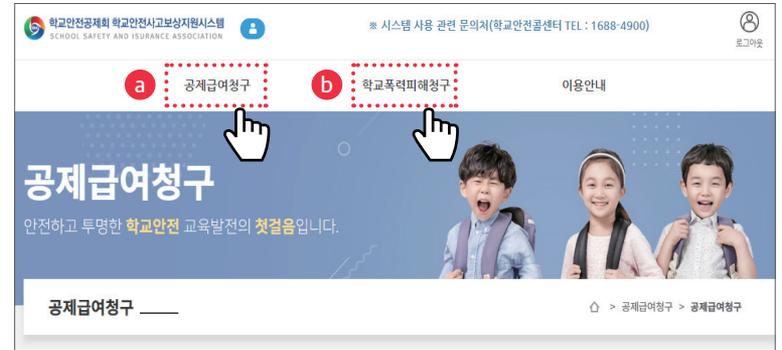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면?

b 공제급여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 가능합니다.

※ 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 가능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a 공제급여청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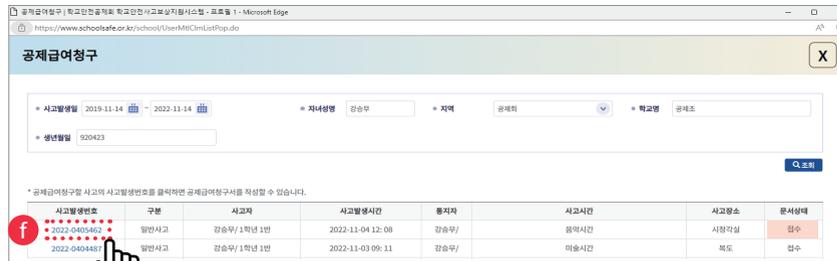
b 학교폭력피해 청구는 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c 청구서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d 자녀정보 입력 후 e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f** 문서상태가 [접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발생번호]를 선택해주세요.
※ [검색된 사고가 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생성되면, 해당 학교에 신속한 사고통지를 요청하세요.

참고 청구순서 : 사고발생 ▶ (학교)사고통지 ▶ (학교 또는 학부모)급여청구

g 기본정보

h 기타사항

☑ 첨부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생략가능), 주민등록등본 등
☑ 유의사항 : 관련 증명 서류 파일첨부

*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사고발생코드: 2022-0357656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 g** 청구서 작성하기(기본정보) : 청구인, 공제가입자(학교장), 피공제자(학생)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 h** 청구서 작성하기(기타사항) : 사고개요, 청구액, 계좌입력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주세요.

3 작성한 청구서 출력



- i** 해당 사고발생번호 박스를 체크 후 **j**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k** 청구 진행상황 확인
※ 처리상태 중 미접수는 공제회에서 확인하였으나 아직 처리 전 단계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전화 043-252-7109 홈페이지 www.chungbuk.ssif.or.kr